

# 발달장애인 의사결정조력을 위한 공공후견지원사업 모범사례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대한민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개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소개
- 공공후견 모범사례
- 맺는말

그림출처: 반갑다, 발달장애인법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15년)

# I . 대한민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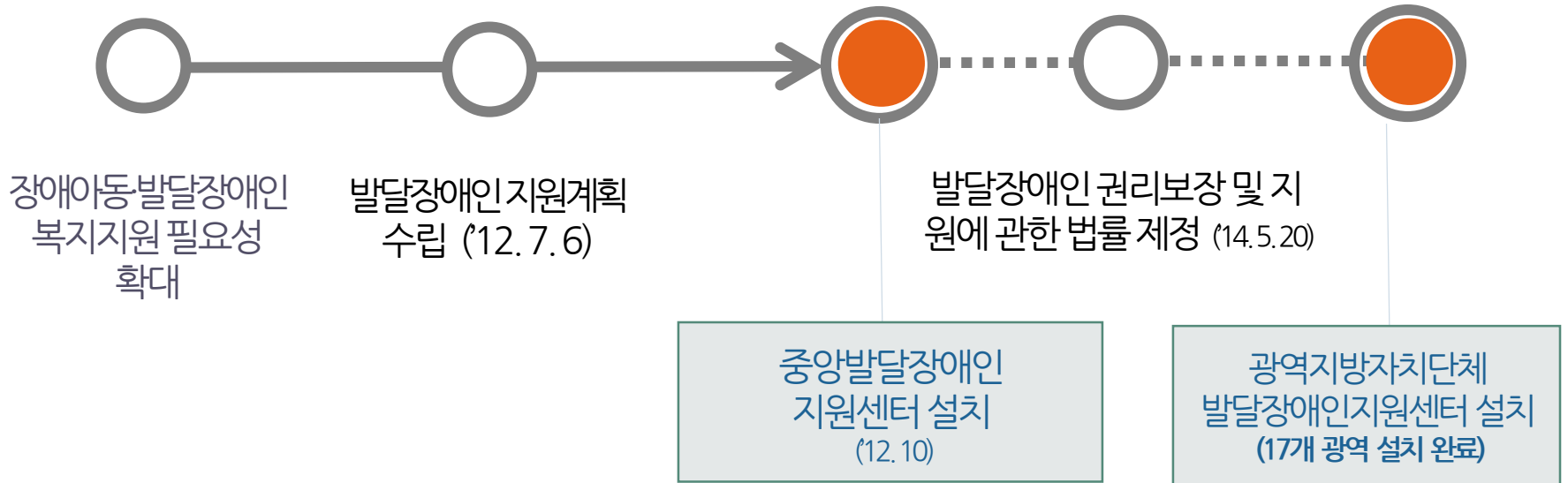
“BIROSO”



# 대한민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적 기관
- 보건복지부에서 설치·운영하는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구분

# 설치 배경



# 주요사업

## 개인별지원계획



## 공공후견지원사업



## 권리구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2)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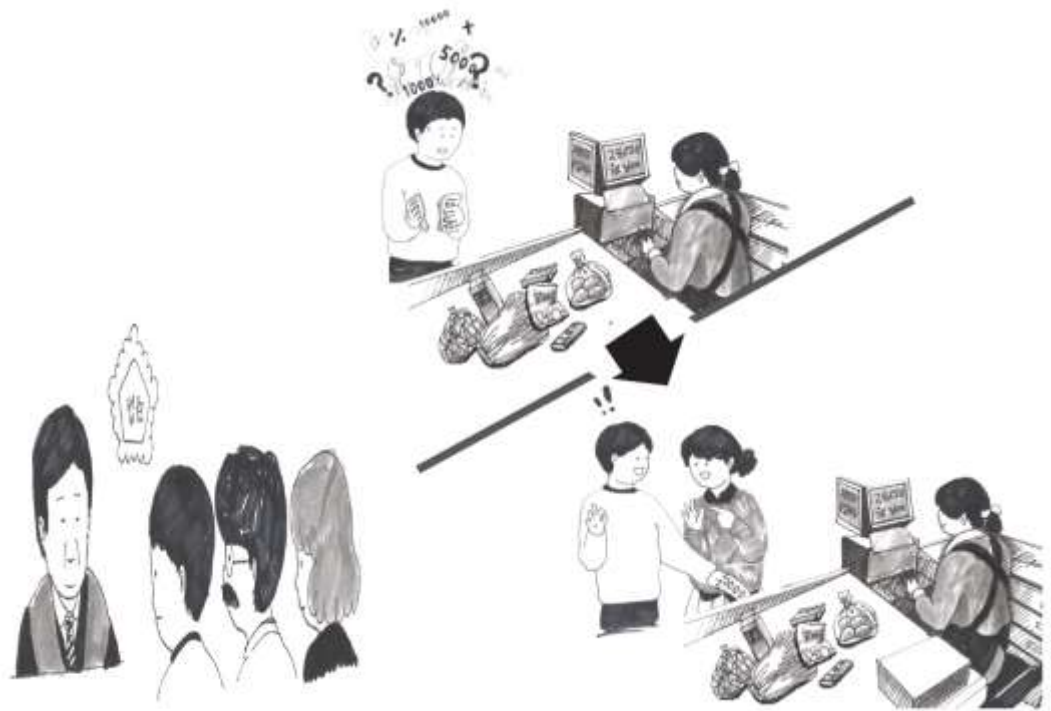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후견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 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 공공후견지원사업\_의의

- 대한민국 정부는 기존의 행위무능력제도가 개인별 특성의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민법」 개정을 통해 행위무능력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2013. 7. 1.부터 시행하고 있음
- 대한민국 정부는 성년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후견인 선임을 위한 자력이 부족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후견지원사업을 2013. 9.부터 시행하고 있음

# 공공후견지원사업\_지원내용

- 후견인후보자 양성
- 후견심판 청구 지원
- 후견인후보자 추천(연결)
- 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 공공후견지원사업 - 후견유형

## 『특정후견』

- 대한민국 성년후견제도의 법정후견 유형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경우 :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평생 동안 후견이 지속됨
- 특정후견의 경우 :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시될 수 없으며, 심판 시 특정후견의 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짐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이념에 가장 잘 부합

# 공공후견지원사업\_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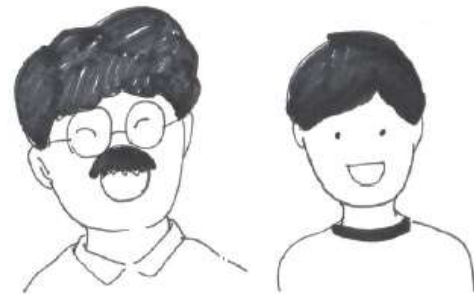
후견심판  
청구지원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 후견인후보자 추천
- 후견심판청구 동의여부 확인
- 후견의 구체적 내용 컨설팅
- 필요서류 취합, 작성  
→ 법원에 후견심판청구

- 후보자 양성, 관리
- 후견활동 오리엔테이션
- 후견인 활동지원, 자문
- 후견활동 모니터링, 후견감독
- 공공후견법인의 직접 후견서비스

### 3. 공공후견 사례소개



support



# 공공후견지원사업에 의한 심판청구 현황

(2013. 9. 1. ~ 2017. 9. 30.)

구분	특정후견 심판청구	사전처분신 청	각종변경 청구	기타	계
2017년	192건	7건	21건		220건
2016년	86건	9건	40건	1건	136건
2015년	76건	26건	11건		113건
시범사업 (‘13.9~’14.12)	336건	49건		2건	387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수행기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 (2013.9~2014.12, 시범사업기간)’, ‘발달장애인지원센터(2015.2~2017.9.30)’ 청구실적 기준임.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청구사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지정한 후견교육기관, 공공후견법인(2017.6~) 등의 심판청구 지원 현황은 포함하지 않음.

\*시범사업기간: 사업수행기관 ‘중앙지원단’을 통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이 중 공공후견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후견심판청구(임시후견 제외)는 317건임.

# 공공후견지원사업 - 사례유형

권리구제 지원



자립지원



Public Guardianship

적절한 보호





# 1. 적절한 보호를 위한 후견신청

지적장애 2급 A(20대, 기초생활수급자)는 알코올 중독인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해오던 중 2014. 1. 원인불명의 낙상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어머니의 방해(지속적인 퇴원요구, 병원에서의 난동 등)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였음. A의 어머니는 이러한 방해 행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되었고, 이후 A는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A의 어머니는 출소한 후 다시 A를 강제로 퇴원시키려 하였다. 이에 A씨 주소지 지자체는 A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A씨에게 공공후견인을 긴급히 연계하였으며, 이후 A는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로부터 안전하게 격리되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 2.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후견신청



지적장애가 있는 A(아내)는 B(남편)와 함께 C(B의 매부)와 함께 거주하던 중 C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A와 B는 C로부터 분리되어 장애인 거주시설로 이전하였고, C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한편, C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수년 동안 연락이 없던 아들 D가 갑자기 나타나 A와 B의 보호자임을 자처하며 C와의 형사합의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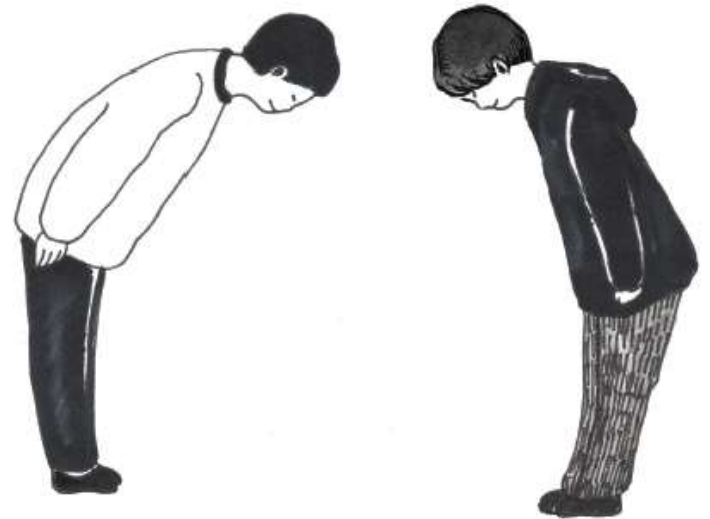
지자체는 피해구제절차 진행 및 피해배상금 관리를 위하여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제도를 통해 A에게 긴급히 제3자 공공후견인을 연계하였다. A는 후견인이 적절한 피해구제절차를 진행함으로써 C로부터 상당한 피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현재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 3. 자립 지원을 위한 후견신청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중이던 지적장애 3급 A(20대,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의 퇴원 의지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고모의 동의 거부로 퇴원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A의 경우 입원사유였던 공격적 행동도 안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퇴원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지자체는 퇴원절차 진행 및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하여 공공후견지원사업을 통해 A에게 후견인을 연계하였고, A는 후견인의 동의를 통해 정신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다. 이후 A는 후견인으로부터 그룹홈 연계, 취업 알선 등의 지원을 받아 자립 생활을 준비하였다. 그러던 중 A는 휴대폰개통 사기, 소액대출 사기, 이른바 몸캠피싱 협박 등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후견인의 지원을 받아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절차를 적절히 진행할 수 있었고 관련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었다. 이후 A에 대한 후견은 종료하였고, 현재 A는 대형마트에서 일하며 지역사회에서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 4. 마치며



## 후견의 원칙

- 일정기간 동안의 후견(특정후견)을 지원
- 발달장애인을 조력하는 이웃을 확보하고 그들을 위한 지지체계를 조성
-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 현재

- 현재 우리사회는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현재시점의 후견 필요성

## 비전

-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사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국 사회의 변화 유도
- 정보접근권, 자기결정권, 표현의 다양성 보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선도



Do you have any Questions?